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3일 이주희의원 등 2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3.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2026.4.3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5.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주희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도체 웨이퍼 표면 점검, 선박·플랜트 비파괴검사 등 첨단 제조업과 기간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내부피폭 등 특수 상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병원 체계는 재활 중심 진료에 특화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사선 상해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4제10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의학원 내 원자력병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종합병원급 진료시설을 갖춘 방사선 상해 전문의

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다만, 현행법은 의학원의 사업으로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상 방사선 상해 치료 기능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과 같이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을 명시함으로써 방사선상해자에 대한 전문치료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능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정책적 근거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